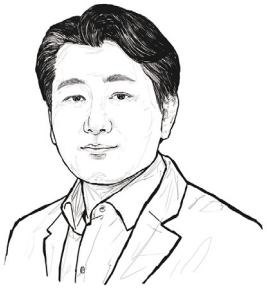

「태아 산재」 인정 기준과 개선 방향 검토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병원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간호사가 출산한 자녀에게서 나타난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승인했다. 이 사건은 '태아 산재를 인정하도록 한 개정 「산재보험법」(이하 태아 산재보험법)[1]'에 따른 첫 승인 사례였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반도체 공장 근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출산한 자녀들에게 나타난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승인했다.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태아 산재보험법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도 태아 산재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가 많은 것 같다. 법령상 태아 산재 인정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태아 산재 인정 기준,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태아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판결과 「산재보험법」 개정

「산재보험법」이 태아 산재를 인정하도록 개정된 것은 2020년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영향이 컸다. 이 판결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들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자녀들을 출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2] 이 판결에 힘입어 「산재

1)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023.1.12. 시행
2)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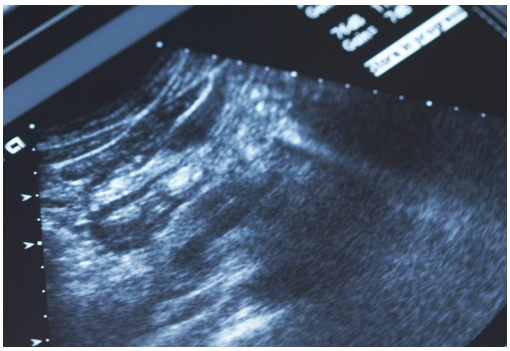

보험법」이 정한 인정 기준에 들어맞으면 태아 산재를 인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아 산재 인정 기준

태아 산재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동 시행령은 태아 산재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납 등 화학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등 약물적 유해인자, 고열 등 물리적 유해인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이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 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태아 산재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로 본다.

태아 산재보험법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태아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태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1. 태아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태아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태아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태아 산재보험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태아 산재 인정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태아 산재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참고해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유해인자를 동 시행령상 태아 산재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태아 산재 인정 기준에 자녀의 부모 중 아버지에 관한 인정 기준이 없다. 자녀의 아버지인 남성이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도 태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역학조사를 거치게 되면 작업 공정·환경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조사, 장기간의 승인 전 대기기간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태아 산재가 인정되도록 인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